

공지: 모든 스탬프 수혜자들 중요함 – 주의 깊게 읽어 주십시오.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

2008 년 10 월 1 일을 기하여 아래의 사항이 유효됩니다.

- 여러분께서 직장 또는 학교에 계시는 동안 여러분의 자녀 또는 부양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이제 여러분의 소득공제에 사용됩니다. 이전에는 \$175 또는 \$200 (부양가족 1 인당)만 소득공제에 사용될 수 있었었습니다. 전반적으로 만약에 여러분께서 1 명의 자녀 또는 부양가족당 \$175/\$200 이상을 지출하시고 있다면 여러분의 혜택은 증가될 것입니다.
- \$2,000 이 넘는 (고령자 또는 장애인인 경우 \$3,000) 모든 “비과세” 교육 저축 (예. #529) 및 연금 구좌는 (예. IRAs) 결정을 하는데 사용되지 않습니다.
- 1 – 2 인 가구가 현금 보조로 사용할 수 있는 최저 푸드 스탬프 금액은 \$10 에서 \$14 로 변경되었습니다. 매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\$14 이상으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.
- 만약에 EBT 카드를 180 일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혜택은 비활성 계정으로 전환됩니다. 365 일 후에는 비활성 계정에 있는 혜택은 소멸됩니다.
- 종이 푸드 스탬프를 가지고 있으시면 2009 년 6 월 18 일까지 반드시 사용하셔야 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 2009 년 6 월 17 일까지 반드시 카운티에 연락해서 남은 종이 푸드 스탬프를 EBT 카드로 전환하셔야 합니다.

이번 변경사항 및 여러분의 푸드 스탬프 혜택이 변경되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세대 현황에 관한 그 밖의 변경사항에 관한 공지를 받으실 것입니다.

새로운 총액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10 월 혜택을 잘못 계산했다고 생각하시면 본 편지를 받으신 후 90 일 이내에 아래의 주소로 서면으로 주정부 공청신청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
또는 무료전화 1-800-952-5253 으로 전화하셔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 청각 장애인이고 TDD 를 사용하시면 1-800-952-8349 로 전화하십시오. 주정부 공청신청을 하실때에는 반드시 저희에게 왜 잘못 계산하신것 같다는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. 공청회에서는 여러분께서 여러분 자신을 대변하거나 또는 친구, 변호사, 또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대변할 수 있지만 반드시 여러분께서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을 찾아야만 합니다. 여러분 지역의 법률 상담소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